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중소기업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6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중소기업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

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31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19년 6월 3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특별신용보증 출연 현황

- 1차 출연 : 2011. 3. 2. (3억원, 보증한도 30억원)
- 2차 출연 : 2015. 3. 10. (2억원, 보증한도 20억원)

5. 검토의견

○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[1] 제4조제2호에 따라 강서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강서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, ㈜우리은행 간에 체결한 강서구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강서구청에 1억 원을 출연하고, 강서구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임

○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1년 3억 원, 2015년 2억 원을 출연하여 204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, 2018년 10

---

1) **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**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
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이 10억 2,000만원으로 단기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

○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한도 추가 확보를 통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출연이므로 동의안 의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